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70
----------	-------

발의연월일 : 2026. 6. 29.

발 의 자 : 윤준병 · 허성무 · 朴芝源
임오경 · 박민규 · 김 윤
김 현 · 조계원 · 박희승
이정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하되,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최근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폭되고 아동 보호의 필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학대피해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하며 치료를 인도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기준은 각 시·도 및 시·군·구별 배치에만 치중되어 있을 뿐, 특정 지역의

아동 수나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 실제 행정 수요와 치유가 시급한 현장의 목소리를 유연하게 반영하여 기관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또한, 학대피해아동이 상흔을 극복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일시 보호나 격리를 넘어, 전인적 성장을 돕는 체계적인 회복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법적 업무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구역의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보호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하려는 것임.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을 명시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 보조 대상에 이를 포함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 복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관할 구역의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및 아동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운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하여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권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제59조제1호 중 “아동복지시설의”를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

설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관할 구역의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및 아동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운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하여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u>
<u><신 설></u>	<u>⑤ 제4항에 따른 권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④ · ⑤</u> (생 략)	<u>⑥ · ⑦</u>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7. <u>피해아동의 조속한 일상 회복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u>
7. (생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9조(비용 보조) ----- ----- ----- ----- -----.
1. <u>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u> 에 필요한 비용	1. <u>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u> ----- ----- ----- -----
2. ~ 8. (생략)	2. ~ 8. (현행과 같음)